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해충돌 위원 직무배제〉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89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배숙 · 곽규택 · 백종현 · 박준태 · 한기호 · 최수진
송석준 · 조경태 · 이만희 · 조지연 · 최은석 · 김용태
김기현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 의안번호 : 598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3(이해충돌 위원의 직무배제)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제32조의4, 제32조의5 및 제48조의2¹⁾는 의원의 이

- 1)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이해충돌 위원회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먼저, 이해충돌 신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다음으로, 이해충돌 회피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의원은 소속 위원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회 선임 제한)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의 안전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전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②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로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등을 두고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²⁾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위원 및 위원회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2)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경찰청)를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를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제도에 비하여 대상 위원회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좁고 그 요건·절차 및 조치 사항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현행법상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제도의 해석·적용을 통해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에 더하여 개정안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위원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위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로 해석·적용하면 의원은 이해충돌 신고 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안건에 대한 직무배제³⁾’보다 중한 조치인 ‘위원 개선’이나 유사한 조치인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가 가능함.

아울러, ①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제도와 별개로 「국회법」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② 의장과 교

3) 다만, 직무배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4) 「국회법」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표-2] 현행법(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및 개정안(이해충돌 직무배제)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이해충돌 신고	이해충돌 회피	이해충돌 직무배제
대상 위원회	모든 위원회	좌동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 수행 기관의 소관 위원회
사적 이해관계자	○의원 본인·가족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 법인·단체 ○의원 본인·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법인·단체 ○의원 본인·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 소유 법인·단체 등	좌동	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요건	안전 심사·국정감조사 관련 직접적인 이익·불이익 발생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절차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 ○(자문위)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의장 등에게 의견 제출	○(의원) 위원장에게 표결·발언 회피 신청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 허가	위원회 의결
조치사항	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위원 개선·개선요청	해당 사안·안전 표결·발언 회피	관련 안전 직무배제

둘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의 사적 이해관계자인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⁶⁾)’보다 그 범위가 좁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② 개정안은 직무배제의 요건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⁷⁾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행법상 ‘이해충돌’의 정의⁸⁾인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개선 또는 개선요청의 판단기준⁹⁾인 ‘직

5) 개정안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자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개정안은 ‘피의자’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업무 수행 기관의 소관 위원회도 해당하므로 ‘피고인’도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국회법」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국회법」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 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도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③ 개정안은 이해충돌 위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관련된 안건에 대한 직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배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¹⁰⁾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에 대한 조치로서 i)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ii)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iii) 직무 재배정, iv) 전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국회법」은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에 대한 조치로서 i) 위원 개선 또는 개선요청, ii)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¹⁾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11) 참고로,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과 별개로 제척사유를 두고 있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

셋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²⁾

문 의 처

02)6788-5017

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12)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 제한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43	김민전의원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 제한